

산 립 청 시 정 요 구

제 목 산지복구비 추가예치 미조치

기 관 명 경상남도

관 계 기 관 함양군, 함안군

내 용

「산지관리법」 제38조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등의 처분을 받거나 신고 등을 하는 자에게 산지전용에 따른 재해방지 또는 복구에 필요한 비용(이하 “복구비”라 한다)을 예치하게 하고 있다.

같은 법 제38조 제3항에 따르면 복구비를 예치하여야 하는 자의 산지전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년 복구비를 재산정하여 이미 예치한 복구비가 재산정한 복구비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예치하게 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 제1항과 제39조에 따르면 예치하여야 하는 복구비는 산지전용 등을 하려는 산지의 면적에 산림청장이 매년 결정·고시한 단위면적 당 복구비 산정기준에 따른 금액을 곱하여 산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제40조의2에 따른 산지복구공사감리 대상(산지전용·산지일시사용 허가를 받은 경우 : 1만제곱미터)인 경우에는 복구비 산정 금액에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별표1에 의한 “공사감리”요율을 곱한 금액을 추가로 예치하여야 한다.

함양군은 ○○○○ ○○○의 2명에게 허가된 ‘채석 허가’건의 경우, 산지전용기간(2007. 3. 7.~2017. 10. 31.)이 1년 이상 경과되었으므로 2013년에 예치한

산지복구비 2,801,506천원과 2015년도 복구비 산정기준(산림청 고시 제2015-25호, 2015. 4.)에 따라 산정한 복구비 2,841,692천원과의 차액 40,186천원을 추가로 예치하도록 하여야 하는데도, 아래 【표】 “산지복구비 예치금 재산정 명세”와 같이 복구비 추가예치금 40,186천원을 추가로 예치하지 않고 있다.

함안군은 ○○○○에 허가된 ‘채광’건의 경우, 산지전용 기간(2013. 10. 30. ~2016. 10. 29.)이 1년 이상 경과되었으므로 2013년에 예치한 산지복구비 238,643천원과 2015년도 복구비 산정기준(산림청 고시 제2015-25호, 2015. 4.)에 따라 산정한 복구비 270,789천원과의 차액 32,146천원을 추가로 예치하도록 하여야 하는데도, 아래 【표】 “산지복구비 예치금 재산정 명세”와 같이 복구비 추가예치금 32,146천원을 추가로 예치하지 않고 있다.

【표 산지복구비 예치금 재산정 명세】

| 시·군 | 소재지 | 허가현황 | | | 복구비 현황 | | 정당복구비 (천원) | 미예치액 (천원) |
|-----|---------------|---|-----------|-------------|-------------|------------|---------------|--------------|
| | | 기간 | 면적 (㎡) | 수허가자 | 예치액 (천원) | 예치일 | | |
| | 계 | | | | 3,040,149 | | 3,112,481 | 72,332 |
| 함양 | ○○○○ 산00-0외 0 | 2007. 3. 7-2017.10.31 | 74,253 | ○○○○ ○○○외 2 | 2,801,506 | 2013. 2.21 | 2,841,692 | 40,186 |
| 함안 | ○○면 ○○리 산00-0 | 2013.10.30-2016.10.29 (현재 연장허가 추진 중) | 8,710 | ○○○○ | 238,643 | 2013.11.22 | 270,789 | 32,146 |

조치할 사항 함양군수는

부족 예치된 40,186천원을 「산지관리법」 제38조 제3항에 따라 추가예치 하도록 하시고, 앞으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산지관리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함안군수는

부족 예치된 32,146천원을 「산지관리법」 제38조 제3항에 따라 추가예치 하도록 하시고, 앞으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산지관리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